

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5년 10월 17일(금) ~ 10월 22일(수) 17시 도착 분까지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 방법	건본주택 방문 접수
건본주택 위치	울산광역시 달동 979번지(대표번호 : 052-269-7771)
유의사항	·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			
공동 서류	○		신분증	본인 (당첨자)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)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-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 /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(대리인 위임 불가) ※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제출처: 대신자산신택취 / 용도: 아파트 계약용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 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 등 "전체포함"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-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(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여부를 "Y"로 설정 발급)
	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	-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	○		복무확인서		-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
	○		전세피해자 확인서류	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 (당첨자)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8항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체류를 증명 - 국내기업·기관에 소속되어 해외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
	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세대원	- 당첨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거주 확인
일반공급 (가점제 당첨자)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
	○	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 확인서		-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
	○		당첨사실확인서		-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 존·비속	-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	- 직계존속: 해외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)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- 직계비속: 만 30세 미만/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- 만 30세 이상/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- 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) -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-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- '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'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대리인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 (당첨자)	-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/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,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) ※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제출처: 대신자산신택취 / 용도: 아파트 계약용
	○		위임장	본인 (당첨자)	-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건본주택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대리인	- 건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)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- 서명가능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5.09.19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